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협약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관리기관”)과 (성명)_____ (채널명)_____ (사업자명)_____ (이하 “수행기관”)은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제작지원”(이하 “지원사업”) 사업의 권리 및 의무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목표 및 내용) ①수행기관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된 “사업수행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수행기관은 계획서에 근거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결과보고를 완수할 의무를 진다.

②수행기관은 제작기간 동안 단계별 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내용과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지원내용 (60팀)	1단계	60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비 콘텐츠 당 10만원(최대 40만원) - 레디메이드 40팀, 라이브 20팀 - 일반 콘텐츠 3편, 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제작 및 업로드(로고삽입) ※라이브는 시그니처 콘텐츠만 집계 *시그니처 콘텐츠 : 수행계획서 기준 특정 컨셉으로 기획, 송출된 콘텐츠 ※공익 콘텐츠 : 도정홍보 또는 친환경 콘텐츠 ※모든 콘텐츠는 5분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함(레디메이드 부문은 편집영상만 집계) - 개별 컨설팅 5회 지원(3회 이상 의무 참석) - 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 진출 기준 $[1 + \frac{\text{단계종료구독자수} - \text{전단계구독자수}}{\text{전단계구독자수}}] \times [\text{콘텐츠 4편 조회수 합}]^*$ *조회수 : 로고 삽입 영상들 중 상위 4개 영상(※숏폼 제외) *일반콘텐츠(시그니처 콘텐츠) 3편, 공익콘텐츠 1편 집계 *공익콘텐츠 조회수 상위 1편 제외 공익콘텐츠는 일반콘텐츠로 집계
	2단계	30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비 콘텐츠 당 45만원(최대 180만원) - 레디메이드 20팀, 라이브 10팀 - 일반 콘텐츠 3편, 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제작 및 업로드(로고삽입) ※라이브는 시그니처 콘텐츠만 집계 *시그니처 콘텐츠 : 수행계획서 기준 특정 컨셉으로 기획, 송출된 콘텐츠 ※공익 콘텐츠 : 도정홍보 또는 친환경 콘텐츠 ※모든 콘텐츠는 5분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함(레디메이드 부문은 편집영상만 집계) - 개별 컨설팅 5회 지원(3회 이상 의무 참석) - 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 진출 기준 $[1 + \frac{\text{단계종료구독자수} - \text{전단계구독자수}}{\text{전단계구독자수}}] \times [\text{콘텐츠 4편 조회수 합}]^*$ *조회수 : 로고 삽입 영상들 중 상위 4개 영상(※숏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콘텐츠(시그니처 콘텐츠) 3편, 공익콘텐츠 1편 집계 *공익콘텐츠 조회수 상위 1편 제외 공익콘텐츠는 일반콘텐츠로 집계
3단계	15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비 콘텐츠 당 80만원(최대 480만원) - 레디메이드 10팀, 라이브 5팀 - 일반 콘텐츠 5편, 공익 콘텐츠 1편 이상 제작 및 업로드(로고삽입) ※라이브는 시그니처 콘텐츠만 집계 *시그니처 콘텐츠 : 수행계획서 기준 특정 컨셉으로 기획, 송출된 콘텐츠 ※공익 콘텐츠 : 도정홍보 또는 친환경 콘텐츠 ※모든 콘텐츠는 5분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함(레디메이드 부문은 편집영상만 집계) - 개별 컨설팅 6회 지원(5회 이상 의무 참석) - 네트워킹 1회 이상 의무 참석
	선발기준	3단계 15팀 중 심사를 통해 5팀 선정 지원사업 결과물 및 제출서류 기반 서면 평가
TOP5	5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크리에이터 수요에 따른 특전 프로그램 제공 ex) 콘텐츠 기획자 지원, 편집자 지원, 채널 광고, 해외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금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 수행 점검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민감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결과 등

※최초 구독자 수는 협약일+1영업일 기준으로 책정되며 단계별 구독자, 조회수 기준일은 관리기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③2항의 ‘일반콘텐츠’는 별도의 주제 제한이 없는 콘텐츠를 말한다.

④2항의 ‘공익 콘텐츠’는 아래의 호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말한다. 수행기관은 각 호에서 선택하여 2항의 ‘공익 콘텐츠’를 수행해야 한다. 1, 2, 3단계의 공익콘텐츠를 제작 및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단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도정홍보(경기도 정책홍보)
2. 친환경

⑤2항의 각 단계별 탈락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본 지원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세미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석 할 수 있다. 다만, 탈락하지 않은 수행기관은 각 단계별 네트워킹을 1회 이상 의무 참석해야 한다.

⑥수행기관은 제작 기간 동안 2항의 각 단계별 명시된 콘텐츠 편수에 관리기관에서 제공한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로고를 삽입하여야 한다. 로고 삽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본 협약서 상 “협약기간”은 제작기간, 성과보고자료 제출, 중간점검 등 지원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다.

②구체적인 사업수행 내용별 기한은 아래와 같다. 서면요청 및 사전협의 없이 수행기관이 기한 내 해당 수행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분	기한
제작기간	2024년 11월 30일(목) 24:00까지
성과보고자료 제출	각 단계 종료 시마다
지원금 지급	각 단계 종료 시마다
최종 성과보고 및 우수 크리에이터 선발	2024년 12월

제4조(지원금 지급) ①관리기관은 제2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수행기관은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에게 지원금 교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단, 본 협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이행이 수행기관에 의해 지연되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흡한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도포기)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조치에 따른 조치 또는 제9조에 따른 협약해지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을 협약기간 동안 포기할 경우 제2조 2항의 기준에 따라 제작 및 업로드한 영상콘텐츠 편수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1항의 영상 콘텐츠 편수에 대한 인정요건은 다음 호와 같다.

1. 1단계 : 편당 10만원(최대 40만원)
2. 2단계 : 편당 45만원(최대 180만원)
3. 3단계 : 편당 80만원(최대 480만원)

③관리기관은 2조 2항의 각 단계의 기간별 1/2시점 이전 포기자 발생 시 선발 후순위자 대상 의견 타진 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이용) ①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원사업 운영과 수행기관의 성장을 위해 수행기관 채널 관리자 권한 및 초상권 이용에 동의한다.

②수행기관은 1항의 채널 관리자 권한을 관리기관 및 지원사업 운영 대행사, 대행사의 컨설턴트에게 부여한다.

③수행기관은 1항의 초상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다.

④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수행기관에 귀속됨. 다만, 관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비영리목적으로 무상사용 가능하다.

제7조(협약 변경) ①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필요시 서면요청을 통해 상호협의 후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제3조의 협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②계획서 또는 협약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수행기관의 문제행위에 대한 조치) ①관리기관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가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의 문제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유형별 문제행위는 아래와 같다.

1인 크리에이터 유형별 문제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침해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 부정확한 정보전달 ○ 정치편향적인 콘텐츠 ○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콘텐츠를 통한 불법행위 조장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뒷광고 등) ○ 영상, 댓글,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모욕 등 부적절한 행위 ○ 참가자의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등 불법행위 ○ 그 외 참가자의 일탈행위, 부적절한 콘텐츠 및 채널운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	--

②모니터링, 언론보도, 민원제기 등을 통해 문제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리기관은 이 사실을 수행기관에게 통지하고, 소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본 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문제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심각성이 낮고, 충분한 소명과 시정이 이루어져 재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심의결과 서면 통보 → 재발방지 협약서 제출 → 모니터링 지속 - 주의 3회 = 경고 1회로 간주 ○ 경고 : 심각성이 높고, 재발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심의결과 서면 통보 → 재발방지 협약서 제출 → 모니터링 지속 - 경고 2회 = 협약 해지로 간주 ○ 협약 해지 : 심각성이 매우 높고, 충분한 소명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협약해지 및 지원금 지급불가 서면통보, 기지급 지원금 환수 - 필요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추가 제재조치 시행
추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처리 : 문제행위가 포함된 지원작 또는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한 비공개 처리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비공개 처리 통보 → 비공개 처리 완료 후 보고 / 재발방지 협약서 제출 - 비공개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조치 가능 ○ 지원금 부분환수 : 비공개 처리된 지원작에 해당하는 지원금 환수(기지급 되었을 경우) 또는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 금액 산정기준 : 단계별 콘텐츠 단가 적용

④관리기관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확정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행기관에 서면통보하고,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⑤수행기관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공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를 확정하여 서면 통보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후 종결하거나,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약 해지)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본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한 경우
2.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예: 제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판명된 경우 등) 단, 이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임이 협약 체결 후 밝혀진 경우
5. 수행기관의 문제행위에 대한 심의결과가 제8조 3항에 명시된 '협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6. 사업운영 핵심 담당자(크리에이터 등)의 퇴사,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7. 사전 협의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성과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수행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 노출된 콘텐츠를 협약기간과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비공개, 삭제 조치하는 경우
9. 협약기간과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수행기관의 채널을 삭제하거나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②제1항에 기재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에게 동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협약 해지에 따른 제재조치는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2년 이내 관리기관의 관련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지원금 환수조치 시 수행기관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반납 당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관리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 때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제10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지원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관리기관의 사업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12조(기타권리) ①관리기관은 본 지원사업 결과물을 홍보 및 비영리 목적 활용할 수 있다.

②본 지원사업 과제수행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제13조(보안)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과제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원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사전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며, 기술이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적·제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수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사업수행내용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수행기관 또한 필요사항을 관리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관리기관은 중간평가 시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관리규정에 준하여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1.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2. 기타 관리기관의 제반규정

제16조(관할법원) 관리기관과 수행기관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은 관리기관의 주소지 소재의 관할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1부

2024년 월 일

관리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	(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수행기관	성명		대표 (성명)		(인)
	채널명				
	사업자명				